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8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 : 야진비 · 강민정 · 노웅래

서영교・양이원영・양정숙

위성곤 • 이병훈 • 이용빈

이형석 · 최종윤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홍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댐의 홍수조절능력의 부족, 사전방류 소홀로 인한 홍수조절능력의 실패와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6조 중 "댐의 저수"을 "홍수의 예방, 댐의 저수"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관리는 <u>댐의 저수</u> 로 인한 공익	<u>홍</u> 수의 예방, 댐의 저
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	<u> </u>
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	
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